

서울특별시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037
------	------

2012년 10월 12일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9월 24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9월 25일
- 다. 상정결과 :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(2012년 10월 5일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로 모델리스트(패턴사)를 발굴하는 패션산업 인력양성사업을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기 위하여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사업
- 주요업무
 - 모델리스트콘테스트 개최를 통한 우수 모델리스트 선발(3차 시험)
 - 모델리스트 관련 수상작 전시회 및 시상식 개최
 - 역대 수상자 패턴기술교육 및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운영
 - 패턴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
- 위탁기간 : 1년(2013. 3 ~ 2014. 2)
- 사업비 : 160백만원(2012년), 170백만원(2013년 예정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 - 추진방법 :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
 - 신청자격 : 패션 관련분야 전문지식 또는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)
 - 패션산업 신진인력양성을 위한 「대학패션위크 및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 개최」 계획(문화산업과-2102, 2012.3.8)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- 1차 : 2000.8.8 ~ 2003.8.7(3년, 서울산업통상진흥원)
 - 2차 : 2003.8.8 ~ 2006.8.7(3년, 서울산업통상진흥원)
 - 3차 : 2006.8.8 ~ 2009.8.7(3년, 서울산업통상진흥원)
 - 4차 : 2009.8.8 ~ 2011.12.31(2년5개월, 서울산업통상진흥원)
 - 2012.5.2 : 제237회 임시회 민간위탁동의안 가결
 - 2012. 6 ~ 2013. 2. 28(8개월, 한국패션협회)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패션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유망 신진패션디자이너 및 패턴사 발굴양성에 필요한 기술과 행사 기획업무 등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패션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.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용훈)

- 본 동의안은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로 모델리스트(패턴사)를 발굴하는 패션산업 인력양성사업을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기 위하여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사안임.
- 2001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는 스타일화를 바탕으로 소재와 디자인의 특성을 반영한 패턴(옷본)을 제작하는 전문가들이 손재주를 겨루는 행사로 수상자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양장기능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며 지난 해에는 경쟁률이 45:1에 이르는 등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콘테스트임.

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 실적

구분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합계(명)
수상자	7	7	11	11	11	11	11	11	11	11	7	109
응시자	204	224	137	207	241	213	226	286	343	304	315	2,700

-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모델리스트 콘테스트를 통한 우수 모델리스트 선발, 수상자 작품 전시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,

그 사무의 성격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 ‘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’, 제3호 ‘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’에 해당하며

모델리스트 콘테스트와 그 후속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패션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유망 신진디자이너 및 패턴사 발굴양성에 필요한 기술과 행사 기획업무 등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.

-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사업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, 2010년 국비보조 8천만원 포함 2억원, 2011년 국비보조 6천4백만원 포함 1억6천만원, 2012년 국비보조 없이 1억6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, 2013년에도 1억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.
- 무엇보다 동 사업은 2001년 이후 12년간 개최되어 그 권위를 높여가고 있으며, 전국 유일의 모델리스트 콘테스트로서 서울 뿐 아니라 전국의 유망모델리스트들이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행사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질의 : 언제까지 민간영역인 패션산업에 서울시가 개입할 예정인가.

답변 :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 위주이지 공공부문의 역할은 많지 않음. 관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간이 아직 준비가 부족하여 보호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. 좀더 심도깊게 논의할 필요

가 있다고 생각함.

5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참석위원 전원찬성)

7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3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년 9월 2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로 모델리스트(패턴사)를 발굴하는 패션산업 인력양성사업을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 사업
- 주요업무
 - 모델리스트콘테스트 개최를 통한 우수 모델리스트 선발(3차 시험)
 - 모델리스트 관련 수상작 전시회 및 시상식 개최
 - 역대 수상자 패턴기술교육 및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운영
 - 패턴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
- 위탁기간 : 협약일로부터 1년(2013. 2~2014. 2)
- 사업비 : 160백만원(2012년), 170백만원(2013년 예정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 - 추진방법 :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
 - 신청자격 : 패션분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동 분야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
나. 그간 추진현황 및 추진근거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2000.8.8 ~ 2003.8.7(3년, 서울산업통상진흥원)
- 2차 : 2003.8.8 ~ 2006.8.7(3년, 서울산업통상진흥원)
- 3차 : 2006.8.8 ~ 2009.8.7(3년, 서울산업통상진흥원)
- 4차 : 2009.8.8 ~ 2011.12.31(2년5개월, 서울산업통상진흥원)
- 2012.5.2 : 제237회 임시회 시의회 동의, 원안 가결(안건명 703, '12.5.2)
- 2012. 6 ~ 2013. 2. 28(8개월, 한국패션협회)

- 동 사업은 2000년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일괄위탁 하여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여 왔으며,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'12년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한국패션협회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

○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
- 패션산업 신진인력양성을 위한 「대학패션위크 및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 개최 계획」 사업 추진계획(문화산업과-2102, 2012.3.8)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패션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유망 신진패션디자이너 및 패턴사 발굴 양성에 필요한 기술과 행사 기획업무 등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패션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관련법령

-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(개정 2009.07.30)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(개정 2011.12.29)